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1월13일) 상정
-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1월13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성광식)

□ 개정이유

-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의 학비 지원에 대한 융자대상자 범위와 융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, 융자금의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상 일비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학자금 융자대상자 중·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조정함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학자금 융자금액을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, 대학교 재학생은 년 100만원을 전문대학이상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조정하고, 등록금의 융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정함(안 제4조제3항)
- 융자금 연체이자를 년 15%에서 년 10%로 조정함(안 제4조제4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이자율 5% 근거는	<input type="radio"/> 시중금리를 감안하였음
<input type="radio"/> 융자금 연체현황은	<input type="radio"/> 총 325건 16억원에 144건 2억4천만원이 연체임(30%)
<input type="radio"/> 연체이자가 15%로 기간이 경과될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 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

- 융자인 및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하여 변제불가능으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제57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제안년월일 : 2002년 12월 13일
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이율은 일반융자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같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년3퍼센트로 한다로 수정(안 제4조제4항)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4조제4항 "5퍼센트"를 "3퍼센트"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용자대상등) ① ~ ③(생략)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 반융자금의 이자는 <u>년 5%</u> 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.	제5조(용자대상등) ① ~ ③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년 5퍼센트 ----- ----- -----	제5조(용자대상등) ①~③(개정안과 같음) ④ ----- ----- 년 3퍼센트 ----- ----- -----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“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학자금”을 “전문대학이상의 학자금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%이내, 실업계고등학교는 50%이내인자로 하고,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“를 ”전문대학이상 신입생 및 전문대학이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30만원, 대학교 재학생은 년100만원”을 “대학생의 입학금, 등록금”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이 경우의 융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중 “5%”를 “~~5~~³퍼센트”로하고 “15%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융자대상) ① (생 략) 1. 및 2. (생 략) 3. <u>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</u> 4. 직계비속에 대한 <u>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학자금</u> 5. (생 략) ② 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 자녀로, <u>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% 이내, 실업계 고등학교는 50%이내인 자로</u> 하고, <u>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(평균“B”학점이상)</u> 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. ③ (생 략)	제3조(융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1. 및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제> 4. ----- <u>전문대학이상의 학자금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전문대학이상 신입생 및 전문대학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융자금액등)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학자금 융자금은 <u>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30만원, 대학교 재학생은 년1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융자한다.</u> <u><후단 신설></u>	제4조(융자금액등)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대학생의 입학금, 등록금</u> <u>이 경우의 융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.</u>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년 5%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제2항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년15%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	④ ----- <u>5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 <u>10퍼센트</u> -----